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4. 28.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20호로 2025년 4월 14일 이규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예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 6조)
- 바. 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4. 15.~2025. 4. 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의무를 명시하고, 자문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의 약 2,600명의 종사자와 38만명의 구민을 중대재해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정의)를 따르도록 하여 입법경제성을 확보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책 수립·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는 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실태조사)**는 **안 제4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영등포구 실태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안전·보건 예산 확보)**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우선, 예산 편성에 관해 “노력”(임의규정)하도록 규정하여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며,
- 또한,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 제9조제1항제1호 법 제9조

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호를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생략)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생략)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안 제7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는 영등포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영등포구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¹⁾**(47개소)만

1) 자세한 현황은 13쪽 참고자료에 수록

있고, 제2호(공중교통수단) 및 제3호(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영등포구 공중이용시설 현황

합계	업무시설 (3천㎡이상)	복합건축물 (2천㎡이상)	어린이집 (430㎡이상)	노인요양시설 (1천㎡이상)	운동시설 (5천㎡이상)	하천제방 (국가하천의 제방)
47	3	17	23	1	2	1

- 안 제8조(자문 지원)는 안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안 제9조(교육 및 홍보)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내 구민,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사무의 위탁)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문지원 ▲교육·홍보에 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토결과

○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및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등 **산업재해**를 비롯한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와 같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21. 1. 26. 제정 및 2022. 1. 27. 시행되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4. 1. 27.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

-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에게도 구민과 종사자를 각각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 본 조례안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영등포구 현황

- 영등포구는 법 시행일(2021. 1. 27.)에 맞추어 2021년부터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 법이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작업환경 위험요소 개선에 대한 2)자문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법이 시행된 후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3)

2)(대상) 제설차량기지, 자원순환센터 (내용)차량과 보행이 겹치는 공간의 동선 분리에 대한 연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및 중대시민재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4년간 산업재해⁴⁾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2021~2024년 영등포구 산업재해 현황

- 총 발생건수: 42건
 - 연도별 발생건수: 2021(13건), 2022(13건), 2023(10건), 2024(6건)
- 직종별 발생현황: 공무원(2), 기간제·일자리사업 등 26건, 공무원직 14건
 - 공무원(2), 기간제(19), 일자리사업(5), 자활(2), 공무원직(14)
-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 넘어짐(16), 떨어짐(3), 베임(8), 부딪힘(4), 맞음(1), 찌힘(1), 기타(9)

- 참고로, 영등포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상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총합계	현업업무 ⁵⁾ 종사자				비현업업무 종사자			
	소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소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2,561	894	205	140	549	1,667	1,404	43	220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을 지정을 통해 중대 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재해 발생 확률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또한, 자문지원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법에 따른 의무 수행자인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수동적인 역할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공(公共)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도 부여함으로써 공공·민간 전반에 걸쳐 안전한 영등포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상기 주요내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공중이용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
공중교통수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용어	정의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u>지방자치단체의 장</u>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타 참고 자료

□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2025.01.기준)

연번	시설물 구분	시설물 명	재산 관리 부서(총괄)	시설 규모	시설물 내 상주기관 (소관부서)
1	업무 시설 (3)	영등포구청(본관)	총무과	지하3층/지상6층 연면적9,682.5㎡	
2		영등포구청(보건소)	총무과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5,600.04㎡	
3		영등포구청(별관)	총무과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5,549.67㎡	
4	복합 건축물 (17)	여의동 주민센터	자치행정과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2,134.97㎡	구립 여의동어린이집(보육지원과)
5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자치행정과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2,992.79㎡	구립동화어린이집(보육지원과) 장난감도서관 맘튼튼센터(보육지원과)
6		도림동 주민센터	자치행정과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2,246.47㎡	구립 예남 어린이집(보육지원과) 청소년 독서실(미래교육과) 늘샘드리 작은도서관(미래교육과)
7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자치행정과	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7,029.11㎡	늘해랑 어린이집(보육지원과) 작은도서관(미래교육과) 공영주차장(주차문화과)
8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자치행정과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2,306.41㎡	장난감도서관(보육지원과)
9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	자치행정과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2,266.96㎡	작은도서관(미래교육과) 융합인재교육센터(미래교육과)
10		신길7동 주민센터	자치행정과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2,644.52㎡	신길7동 구립경로당(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 독서실(미래교육과) 작은도서관(미래교육과)
11		영등포구민회관(아트홀)	문화체육과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10,645.5㎡	꿈더하기카페(어르신장애인과) 자원봉사센터(자치행정과) 청소년 독서실(미래교육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미래교육과) 어린이집(보육지원과) 구의회사무국(구의회사무국)
12		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	문화체육과	지하0층/지상3층 연면적2,999.18㎡	
13		영등포문화원	문화체육과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3,804.20㎡	
14		YDP미래평생학습관	미래교육과	지하1층/지상5층	맘튼튼센터(보육지원과)

연번	시설물 구분	시설물 명	재산 관리 부서(총괄)	시설 규모	시설물 내 상주기관 (소관부서)
				연면적4,738.5㎡	중장년 희망 일자리 플랫폼(일자리경제과) 스마트교육장(홍보미디어과)
15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6,477.57㎡	신길1동주민센터(자치행정과) 신일 어린이집(보육지원과) 영등포구가족센터(아동청소년과)
16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영중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8,558.10㎡	영등포동 주민센터(자치행정과) 행복한 영이 어린이집(보육지원과)
17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2,983.36㎡	경로당(어르신장애인과) 구립 영등포노인복지센터(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독서실(미래교육과)
18		그린 & 케어센터	어르신 장애인과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2,819.63㎡	아이랜드 우리동네키움센터(아동청소년과) 치매안심센터(건강증진과)
19		여의도 복지관	어르신 장애인과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3,730.41㎡	구립동근마음 어린이집(보육지원과)
20		어울림센터	어르신 장애인과	지하3층/지상7층 연면적3,058.79㎡	생각공장도서관(미래교육과)
21	어린 이집 (23)	영신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1,642.02㎡	
22		꿈나무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1,066.24㎡	
23		대림1동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476.22㎡	
24		하정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3층 연면적508.53㎡	
25		다운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477.82㎡	
26		신길5동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3층 연면적770.86㎡	
27		해태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1,450.38㎡	
28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1,763.76㎡	
29		양평2동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462.38㎡	
30		선재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3층 연면적845.7㎡	
31		문래동제2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478.34㎡	
32		어깨동무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656.42㎡	
33		남서울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2층 연면적490.17㎡	

연번	시설물 구분	시설물 명	재산 관리 부서(총괄)	시설 규모	시설물 내 상주기관 (소관부서)
34		영등포든든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489.88㎡	
35		당산2동은솔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719.08㎡	
36		신길센트럴자이솔빛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584.27㎡	
37		신길힐스테이트나래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591.87㎡	
38		양평3가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2층 연면적763.45㎡	
39		늘해랑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450.94㎡	
40		신일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614.12㎡	
41		예념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2층만 연면적489.68㎡	
42		동근마음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570.07㎡	
43		행복한영이어린이집	보육지원과	지하0층/지상1층 연면적446.7㎡	
44	노인 요양 시설 (1)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어르신 장애인과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4,443.8㎡	
45	운동 시설 (2)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문화체육과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9,169.36㎡	
46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문화체육과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6,674.19㎡	
47	하천 제방 (1)	안양천 제방	안양천제방	연장 4,840m (제방 사면30m 중점4.9m)	